

#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

## ① 인적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 ② 재취업활동 계획

해외체류 목적		해외체류 기간	
해외체류 자격		해외체류 지역 (국가/도시)	
취업희망직종	- 1순위 : - 2순위 :		
구체적인 재취업 활동계획	1	<i>&lt;예시&gt; 0월 0일 A회사에 방문하여 대면 면접에 응시할 예정</i>	
	2	<i>예정된 모든 구직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i>	
	3		
	4		
	5		

### ※ 해외 재취업활동 실업인정시 유의사항※

1. 방문목적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
2. 체류자격 : 해당 국가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자격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취업가능 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체류자격 사본, 비행기 티켓 사본 첨부
3. 재취업활동 : 대면 구직활동만 가능.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구직자 스스로 증명해야함  
 - 대면면접 후 Work Search Report와 명함 등 구직활동 증명자료 첨부  
 - 구직활동내역 전송 시 구인사항, 근무조건, 면담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  
 - 해외 체류 기간 중 국내 구인업체 지원하는 경우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 불인정  
 - 해외 취업포털사이트에 온라인 지원, 온라인특강수강으로 실업인정 불가
4. 1차(장기, 반복 수급자), 4차(모든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의 장기 수급자 의무 출석 회차에는 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방문회차 미방문시 해당 회차 부지급)
5. 의무출석 방문회차를 제외하고 인터넷 전송 가능(지정된 실업인정일 한국시간 00시~17시까지) 해당 회차 미전송시 부지급(인터넷 전송시 Work Search Report와 명함 등 첨부)

「고용보험법 제4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추후 허위나 거짓의 내용으로 인해 부정수급 처리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